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뉴스레터

June. 29, 2020

In this Issue

- I. Law & Regulation
- II. Expert Reports
- III. News
- IV. Events

Key Contacts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월간뉴스레터에서 감사위원회와 관련한 최신 이슈, 국내외 최신 동향, 법령 및 감독당국 소식, 전문가 보고서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교육 및 강연 등 이벤트 소개를 통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여 추진하시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자료의 원본이 있는 경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I. Law & Regulation

회계개혁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추진

예정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0.6.22]

개요

- 6월 22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관 하에 「회계개혁 간담회」가 개최되어, 회계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고 그간 제기된 회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함
- 올해는 회계개혁 핵심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로 **회계개혁 성패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함
- **회계개혁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여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

주요 내용

- **[직권지정 제도]** 新외부감사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 삭제 등의 개선 예정(~9월)
-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결 정족수 등을 합리적으로 규율하여 개선할 예정(~12월)
- **[감사인선임위원회]** 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7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는 등의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9월)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감사인들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리를 걱정하여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초기 계도 위주의 감리 로드맵 마련(~12월)

상법 개정안 주요 쟁점

-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쟁점
 - ‘다중대표소송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 불명확·불합리한 법령 함께 정비
 - ‘감사 등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개선’

다중대표소송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공백 상태
- 주요 내용
 -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

* 비상장회사는 1/100, 상장회사는 1 만분의 1(현행 대표소송과 동일)

- 기대효과
 -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 등 모회사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 제고
 -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가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위한 보충적 수단일 뿐, 자회사 이사의 책임이 증가되는 것은 없고 자회사 경영 개입수단도 될 수 없음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 현황 및 문제점
 - [분리선출제 도입] 현재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여 이사 선임 단계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대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이사만 감사위원 후보자로 선임됨
 - [의결권 제한 규정 정비] 현행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 3% 의결권 제한 규정에 대하여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최대주주와 나머지 주주, 2 조원 이상 상장사와 나머지 상장사를 이원화하여 취급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구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고, 해석 상 혼란이 있음

- 주요 내용
 - [분리선출제 도입]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선출하도록 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감사위원 ‘1명 이상’을 분리선출 하도록 함(동법 19 조)

- 기대효과
 - [의결권 제한 규정 정비]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하여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일원화
- 기대효과
 -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경영 건전성·투명성 및 감사위원 및 감사 선임시 운영 효율성 제고

감사 등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 현황 및 문제점
 - 새도보팅제도 폐지(‘17. 12.) 및 3% 의결권 제한 등으로 인해 의결 정족수 충족이 곤란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여 원활한 회사 의결기구 운영 지원 필요
- 주요 내용
 - 주주총회 결의 대표성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하여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

* (현행)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수로 의결

(개정) 전자투표 실시회사 =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로 의결

** [예시] 최대주주 등 63%, 나머지 3% 이하 소수주주 37% → 최대주주 63% 참석, 소수주주 6% 참석시

	최대주주 등	소수주주	발행주식총수
감사위원선임	3	37	40

→ (현행) 소주주주가 6%만 참석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4인 10%가 성립되지 않아 안건 부결

→ (개정) 발행주식 총수요건 고려하지 않고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로 의결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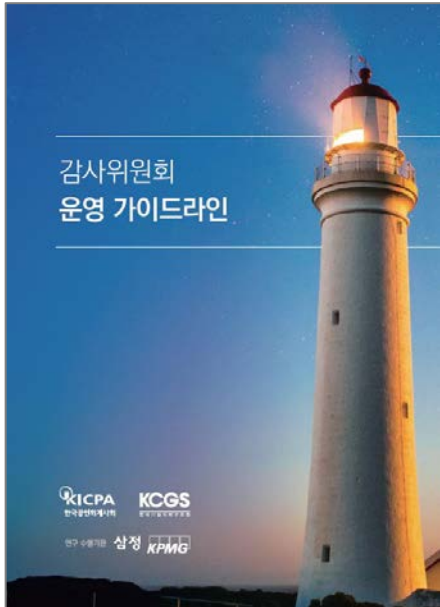
- 기대효과

-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유도 및 회사의 주주총회 운영 지원

▲ Back to top

II. Expert Reports

『감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삼정 KPMG 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공동으로 '감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2018 년에 발간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매뉴얼·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위원회(감사)의 역할 제고를 위한 운영 매뉴얼과 핵심감사사항을 담았으며, 주제별로 모범규준, 관련 법규, 안내지침, 참고 규정 등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책자는 삼정 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ACI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획·조사본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삼정 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CAO rising: How the chief accounting officer role is evolving



Global KPMG 에서는 회계담당최고임원(CAO) 22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19를 포함하여 CAO 가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 CAO 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CAO 에게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전통적 역할뿐 아니라, 회사의 사업 혁신과 전략 수립에 기여하는 새로운 역할 또한 요구받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어떻게 CAO 가 최고경영진과 협력하고 회사의 혁신에 기여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처] Global KPMG

▲ Back to top

III. News

KPMG

- 삼정 KPMG, 회계사회·기업지배구조원과 '감사위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한국세정신문]
- 삼정 KPMG,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응전략 웨비나 6월 18일 개최 [이데일리]

Internal Audit

- 사업보고서 내 재무사항 미흡비율 44.5%..."감사기구 의사소통 부실" [뉴스핌]
- "내부감사기구 제 기능할 때 외부감사인에 적절한 보상" [이데일리]
- Study Provides New Insights About Internal Whistleblowing [Forbes]
- Best practices for auditing in the current crisis and beyond [Compliance Week]

Regulatory Issue

- 회계개혁 3대축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일신문]
- 삼성·현대차 등 금융그룹감독법 추진 '내부통제·건전성 강화' [파이낸셜뉴스]
- '소수주주 권한강화·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본격 추진 [연합뉴스]

Corporate Governance

- '221개 대기업 지배구조...작년보다 나아졌다 [머니투데이]
- Social Upheaval Heightens Board Responsibilities [Forbes]

▲ Back to top

IV. Events

제6회 삼정 KPMG Audit Committee Institute (ACI) 세미나

『동영상 드라마를 통한 감사위원회 활동 사례 연구』

- Drama for Case Study on Audit Committee Activity

- **COVID-19로 인해 본 세미나는 Webinar(웹세미나)로 진행**
- 일 시: 2020년 7월 24일(금), 14:00 ~ 17:00
- 장 소: 온라인 웨비나(Web-seminar) 실시간 진행
(접속경로는 사전 등록자에 추후 별도 안내)

[참가신청 \(여기를 클릭하시면 참가신청 사이트로 이동\)](#)

(하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예고편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내 용

Time	Agenda	Speaker
14:00 ~ 14:05 [05 분]	참석자 안내 : 사회자	
14:05 ~ 14:10 [05 분]	Opening Remarks : 김교태 CEO (삼정 KPMG)	
14:10 ~ 14:30 [20 분]	Session I : Keynote Speech – 법규 제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 활동 변화	한중수 교수 (이화여대)

14:30 ~ 15:10 [40 분]	Session II-1 : 동영상 드라마 시청 감사위원회 활동 사례와 시사점 •기,起: 외부감사인 선정 •승,承: 감사계획 수립	김유경 전무 ACI Leader (삼정 KPMG)
15:10 ~ 15:25 [15 분]	Coffee / Tea Break	
15:25 ~ 16:05 [40 분]	Session II-2 : 동영상 드라마 시청 감사위원회 활동 사례와 시사점 •전,轉: KAM(핵심감사사항) 논의 •결,結: 외부감사 의견형성	김유경 전무 ACI Leader (삼정 KPMG)
16:05 ~ 16:55 [50 분]	Session III : 패널토의 및 Q&A	삼정 KPMG ACI 자문교수단, 강연자
16:55 ~ 17:00 [05 분]	Closing Remarks :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삼정 KPMG)	

- **문의처:** 강환우 이사 (02-2112-738, hwanwookang@kr.kpmg.com)
박슬기 연구원 (02-2112-3305, spark77@kr.kpmg.com)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2020년 제1회 정기 포럼

- **주 최:**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
- **일 시:** 2020년 7월 7일(화) 09:30~11:20
- **장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 119 더 플라자 호텔 별관 11층 그랜드 볼룸
- **내 용**

Time	Agenda	Speaker
09:00 ~ 09:30 [30분]	참가자 등록	
09:30 ~ 09:40 [10분]	인사말	금융위원회
09:40 ~ 10:20 [40분]	주제1. 감사인간 의견불일치의 사유 및 해법모색	고려대학교 정석우 교수
10:20 ~ 10:30 [10분]	Break Time	
10:30 ~ 12:20 [50분]	주제2. 감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매뉴얼·체크리스트 업데이트) 소개	삼정KPMG 심정훈 상무

- 시간 및 주제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세미나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Back to top



한은섭 대표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김유경 전무이사
ACI Leader



심정훈 상무이사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강환우 이사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Privacy | Legal

kpmg.com/socialmedia

INTERNAL USE ONLY

kpmg.com/app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0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